

성폭력, 성희롱 없는 캠퍼스 만들기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의사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노동권이나 교육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단순히 지나가는 말에서부터 포옹이나 신체적 접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넓은 의미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여 성희롱을 성폭력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성희롱, 성폭력, 일상 문화의 문제이다.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성찰해야 하는 문제이다.

성폭력은 성차별적 문화의 산물이다.

성폭력 사건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85%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며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폭력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 온 폭력을 문제시하는 것이며, 일상에 스며있는 성별 권력을 성찰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인지, 문제가 된 언행의 전후 맥락은 어떠한지 살펴봐야 한다. 성폭력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넘기지 말고 일상문화를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성별화된 칭찬 방식, 폭력을 문화로 답습해 온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만 잘못되었다는 인식은 성폭력을 일상과 동떨어진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므로 성폭력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지해야 한다.

성희롱, 성폭력의 판단기준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일이다. 내가 겪은 일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했을 때 주변에서 보일 반응과 스스로를 '성폭력 피해자'라고 칭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불쾌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 자신이 겪은 일이 성폭력 예방 지침서의 사례와는 다르게 '사소한 일'같다는 느낌이 뒤섞여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경험은 단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성폭력인 일이 나에게는 아닐 수도 있고, 과거의 일이 시간이 지난 후에 성폭력으로 다시 생각되기도 하며, 같은 말도 나와 상대의 관계나 당시 정황에 따라 성폭력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겪은 일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흔히 성폭력이라고 여기는 일과 나의 경험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나의 느낌, 나와 상대방의 관계, 당시 상황과 맥락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경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성폭력 피해경험은 그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 없이 말해질 수 없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써 성폭력 문제를 직면하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의 실수나 이상한 행동으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 공동체 문화의 어떤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동료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ex1) 모임에서 선배가 술을 강요하고 술에 취하면 여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포옹을 하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다들 술에 취한 것이기에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 술에 취해 성적 농담을 하거나 신체적 성추행을 하는 가해자를 두고 술에 취해서 그렇다고 넘어가는 것은 좋은 대처방법이 아니다.

ex2) 여성의 신체를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 피해자가 해당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심리적 위축이나 충격으로 인해 행동반경이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ex3)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가 술에 취한 후배를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여러 차례 포옹과 키스를 시도하였다. 선배인 남성은 후배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상대도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사건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상대방도 가만히 있기에 원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침묵이 어떤 경우 거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이 곧바로 동의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동의와 강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별권력이나 남성 중심적 인식이 어떻게 상대의 침묵을 오독하게 만드는 지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 밤거리 성추행 및 스토킹, 언어성폭력, 엠티 및 OT에서 성별 구분 없는 합숙 등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가해자에게 동조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주변인에게 또 다른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건발생 후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피해를 극복하고 이후의 건강한 삶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때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성폭력 사건을 정당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제공자'나 '민감한 사람'으로 치부되어 버린다면 피해자는 점점 더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워지고 성폭력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 피해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적대시하는 등의 언행
-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우
- 사건 당사자들의 신변을 노출하거나 외부에 발설하는 등의 언행

성희롱, 성폭력 상담실

02-2123-2118 helper@yonsei.ac.kr 월~금 09:00 - 17:00

총여학생회

02-2123-3645 yonseiho@yonsei.ac.kr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338-5801~2 ksvrc@sisters.or.kr <http://www.sisters.or.kr>

성폭력생존자 권리헌장

-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 성폭력 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권리
-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